

계급 환산 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구분 계급	국가·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	군인	교육공무원			공공기관	관련 직무분야 학위 소지자
			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교원	전문 대학 교원	대학 교원		
경정	5급	소령	18~23호 봉	13~18 호봉	11~16 호봉	과장 차장	박사학위 소지자
경감	6급 (3년이상)	대위	14~17호 봉	11~12 호봉	9~10 호봉	계장, 대리 (3년이상)	
경위	6급	중위 (항공요원은 준위)	11~13호 봉	9~12 호봉	7~8 호봉	계장, 대리	
경사	7급	준위 (중사)	9~10 호봉	8호봉 이하	6호봉 이하	평사원 (3년이상)	
경장	8급	중사	4~8 호봉			평사원	
순경	9급	하사, 병	3호봉 이하			평사원	

비고

1.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.
2.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채용하되,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.
3.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함정요원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, 전문대학 교원 및 대학 교원의 호봉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.